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37호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 적용대상: 「선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월 2,363,1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월 2,792,82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4,887,43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해야 함
-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선원법」 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4.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 또는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가.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공통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일정한 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p>위의 공통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산입하지 않는 임금·수당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직책의 경종 또는 자격 소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10%를 초과한 액(2023년은 5%를 초과한 액, 2024년부터는 전액) 4.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다만, 선원법 제76조에 따른 선내급식, 제77조에 따른 선내급식비 또는 선내급식을 대체하기 위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제외), 숙박비, 교통비 등 선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2%를 초과한 금액(2023년은 1%를 초과한 액, 2024년부터는 전액) 5. 승무수당·항해수당 등 선박에 승무하여 항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나.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승선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 ·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어선의 비율급, 생산의 장려수당 및 운반선의 운반수당 5. 그 밖에 결혼수당 · 월동수당 · 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 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 수당
‘일정한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원법 제73조에 따른 유급휴가급 및 유급휴가 근로수당 2. 선원법 제62조 규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3.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일정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식사, 기숙사 · 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선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